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69 발의연월일: 2022. 10. 11.

발 의 자:정일영・이성만・신동근

유동수 • 주철현 • 유정주

황운하・홍정민・이수진(비)

허종식 · 김승원 · 이동주

강득구 • 이용우 • 김경만

김주영·김영주·강민정

신정훈 • 이용선 • 윤재갑

김회재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소금속은 미래차, 반도체 등 산업고도화에 필수적인 핵심소재로 신산업 성장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희소금속은 중국, 호주,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국가에 매장·생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같은 자원보유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수출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공급 및 가격 불안, 그리고 무역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이에 세계 각국은 희소금속을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과도한 수입 의존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구축과 자국내 산업기반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재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 정·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해 우리나라 희소금속산업 경쟁력을 강 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의 국가안보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희소금속 공급국가 및 수 요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2. 희소금속 비축체계에 관한 사항
- 3. 희소금속이 함유된 폐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 4. 희소금속 전문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5. 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6. 희소금속의 생산 · 수급 및 재고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7. 희소금속산업발전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표준화·통계 체계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과 관련하여 희소금속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7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와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 등에 관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별표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 희소금속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업무
 - 2. 희소금속산업 관련 선행연구 · 개발에 관한 업무
 - 3. 희소금속 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 4. 희소금속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 5. 희소금속산업 생태계 분석과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6. 희소금속 관련 국제협력대상국 및 대상 기관·기업과의 상호 교 류에 관한 업무
- 7.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 또는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
	는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
	는 희소금속의 국가안보적 특
	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희소금
	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희소금속 공급
	국가 및 수요국가와의 협력
	에 관한 사항
	2. 희소금속 비축체계에 관한
	<u>사항</u>
	3. 희소금속이 함유된 폐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4. 희소금속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
	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6. 희소금속의 생산·수급 및 재고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 항
- 7. 희소금속산업발전의 기반조 성에 필요한 인력양성·표준 화·통계체계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시책 마련과 관련하여 회소금속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와 통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및 정 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희소금속산업 경쟁 력 강화와 희소금속 공급망 안

<신 설>

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 1항 별표에 따른 한국생산기 술연구원
-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갖춘 기관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 1. 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개발 등 희소금속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
- 2. 희소금속산업 관련 선행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 3. 희소금속 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 4. 희소금속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 5. 희소금속산업 생태계 분석과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6. 희소금속 관련 국제협력대상 국 및 대상 기관·기업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업무
- 7.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 경쟁 력 강화 또는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업무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면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한다.